

# 漢城府의 ‘統戶番圖’ 제작과정을 통해 본 大韓帝國期 觀光坊 대형필지의 변화양상

鄭 貞 男\*

(공학박사,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교수)

주제어 : 漢城府, 觀光坊, 光武戶籍, 統戶番圖, 주소체계, 중친부, 송현동, 간동

## 1. 머리말

본 연구는 光武年間に 작성된 한성부호적<sup>1)</sup>을 분석하여 일제강점기 이전 ‘統戶番圖’<sup>2)</sup>를 제작하는 과정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다. 더하여 ‘통호번도’ 제작과정을 통하여 읽어낼 수 있는 대한제국기 도시적변화의 내용을 관광방을 대상으로 고찰하려는 것이다.

1910년 10월 1일 한성부는 京城府로 이름이 바뀌었고 1914년 4월 1일부터는 기존의 部(署)-坊-契-洞-統-戶의 순으로 구분하던 행

정구역제도도 폐지되었다. 대신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경성부를 186개의 洞·町·通으로 구획하고, 각 洞·町·通에 속한 필지에 순차적으로 地番을 부여하여 주소로 사용하기 시작했다.<sup>3)</sup>

이와 같이 형성된 주소체계의 지번은 住戶의 번호와 일치해서 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地籍圖만 있으면 찾으려고 하는 필지의 도시적 입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 統·戶로 구분되던 이전시기와는 전혀 다른 체제로 지번이 부여되어서 조선시대 행정구역제도와와의 연속적인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단점은 그동안 토지와 건물에 관한 정보가 담긴 근대이전 사료가 발굴되어도 정확한 위치를 비정할 수 없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연구의 진척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었다.

본 연구자도 최근 조선후기 한성부의 도시와 건축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앞서와 같은 문제에 봉착하였다. 이에 문제를 풀고 연구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 교신저자, 이메일: moonia@aks.ac.kr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KRF-2008-358-H00003]

1) 광무년간에 작성된 호적에 관해서는 2장에서 보다 자세히 언급할 것으로, 본문에서 ‘光武戶籍’이라고 칭하는 것은 광무년간에 작성된 호적을 통칭하는 것임을 미리 밝히겠다.

2) ‘統戶番圖’라는 용어는 필자가 만든 용어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지도류 중 각 필지에 지번을 기록한 것을 地番圖라 부르고 있는데, ‘통호번도’는 이에 대비되는 용어로 일제강점기 이전의 주소체계 중 가장 하위단계인 統과 戶를 기록한 지도라는 의미에서 ‘統戶番圖’로 이름하게 되었다. 이 명칭에 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다시 명명할 수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우선 해당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3) 강병식, 『日帝時代 서울의 土地研究』(1판, 민족문화사, 서울, 1994) 30~48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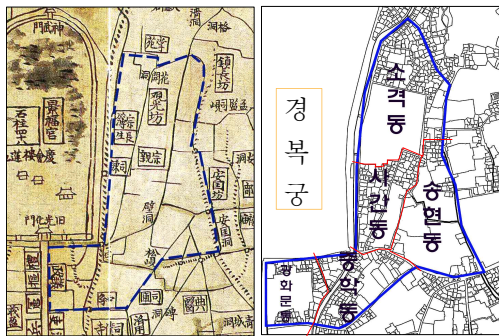
## 8 논문

고민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일제강점기 이전의 주소체계가 반영된 새로운 ‘통호번도’ 제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고는 이와 같은 배경으로 진행되고 있는 ‘통호번도’ 제작과정의 일부를 다룬 것이다. ‘통호번도’는 ‘光武戶籍’과 ‘1912년 토지조사부’를 비교분석하고, 그 분석한 결과를 ‘1914년에 제작된 지적도’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작성해가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관광방을 대상으로 ‘통호번도’ 제작과정과 그 과정에서 밝혀진 도시적 변화에 대하여 다루려고 한다.

관광방은 경복궁 동쪽지역으로 宗親府, 宗簿寺, 義賓寺, 長生殿, 司諫院, 中學, 議政府 등이 자리했었던 곳이다. 관광방을 우선 대상으로 삼은 것은 광무호적 등 분석할 수 있는 사료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고, 또 고종 즉위를 기점으로 상당한 도시변화를 겪었는데 대부분 왕실 및 국가기관이어서 연구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뿐 만 아니라 현재 송현동 일대<sup>4)</sup> 및 중친부 터와 중학천등이 발굴·정비되고 있어 연구 후 실제적 상황과도 비교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발굴된 ‘광무호적’은 한성부 전체



<그림 1> 觀光坊의 경계와 洞의 구분

[좌] 19세기중반 조선경성도(서울시중합자료실 소장)

[우] 1914년 제작지적도(경기대 도시사연구실 제공)

4) 송현동 49-1번지 일대 36,642㎡의 발굴이 진행 중이다. 이 땅은 대한항공 소유로 옛 주한 미국대사관 부지로 알려져 있다.

의 1/6정도에 해당하는 것뿐이다.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작업과정이 모두 끝난다고 하더라도 한성부 전체의 ‘통호번도’를 완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성부 일부의 행정구역체제와 근현대 시기의 행정구역체제의 상호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냄으로써, 그동안 단절적으로 읽혀졌던 근대기 한성부의 도시구조를 연속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찾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광무년간 한성부호적의 분석방법과 ‘통호번도’ 제작과정

### 2-1. 광무년간에 작성된 한성부호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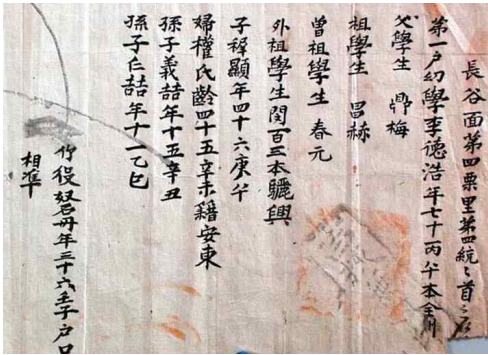
조선의 호적은 실제 주민을 가족관계에 기초하여 등재한 현재의 주민등록과 같은 것으로<sup>5)</sup> 간지의 甲子로부터 3년마다 地支의 뒤애 子·卯·午·酉가 붙는 해에 작성되었다.<sup>6)</sup> 작성과정은 각각의 행정구역내 주민들에게 등재사항을 적은 戶口單子를 내게 하고 이를 기초 행정 단위별로 모은<sup>7)</sup> 다음 여기에 기초하여 郡·縣·府 전체를 포함하는 호적대장을 만드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호적대장은 3~4부를 베끼어 1부는 지방관청에서 보관하고, 나머지는 중앙의 호적나 한성부, 도의 감영에 올려 지방관청의 통치 및 재정운영의 근거로 삼았다.<sup>8)</sup>

5) 손병규, 『호적』 (1판, 휴머니스트, 서울, 2007), 34쪽 참조. 일제강점기인 1920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호적은 혼인·출산 및 양자결연으로 맺어지는 가족의 거주·이동을 불문하고 本籍으로 기재하던 것으로 조선의 호적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손병규, 앞의 책 16쪽 참조)

6) 손병규, 앞의 책, 40~41쪽 참조

7) 기초행정구역에서 모은 호적을 ‘戶口中草’라고 칭함.

8) 손병규, 앞의책, 73쪽. 호적대장에 기재된 결과는 해당하는 호의 사람이 호구 등재상황을 확인하려 할 때 관에서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여 발급해주기도 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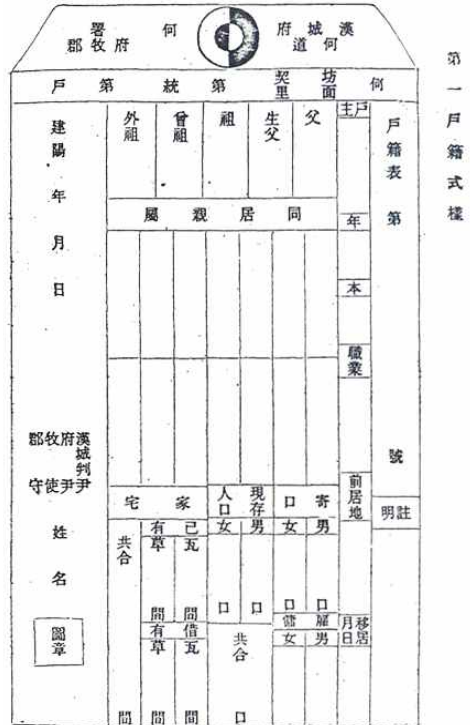
<그림 2> 1896년 이전의 호적기재방식  
이덕호의 호구단자(독립기념관 소장), 작성년대미상

이때 각 호에서 적어 제출한 호구단자는 기록한 종이의 크기며, 형식도 제 각각이어서 그 기록내용이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았던 듯하다. 이와 같은 호구조사방법은 대한제국이 성립되기 직전인 1896년 9월에 '호구조사규칙'과 '호구조사세칙'이 공포되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진행되었다. 戶마다 <그림 3>과 같은 양식의 호적표에 내용을 기재한 뒤 이를 행정구역별로 묶어서 호적장부로 제작하였다. 바뀐 방식으로 처음 호구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갑오개혁이 있는 그 다음해인 建陽元年(1896)이다. 이후 대한제국이 성립된 1897년부터 1907년까지 광무년간 내내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작성된 호적을 통칭 '광무호적'이라 하며, 이전의 호적과 대비하여 '신식호적'이라고도 부른다.<sup>9)</sup>

기존의 호적이 주소, 戶主, 四祖, 가족관계만을 적었던 것에 비하여 '광무호적'은 이전 거주지, 이사하여 들어 온 날짜, 고용인의 수, 가족의 재료와 규모를 더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작성된 '광무호적'을 학술적 자료로써 보자면, 사회사·경제사·역사학분야 연구의

이를 준호구(准戶口)라고 한다. 현재 가족관계부와 같은 것이다.

9) 손병규, 앞의 책, 48~51쪽 참조



<그림 3> 제1호 호적양식  
그림 출처 : 규장각원문정보 서비스, 건양원년 9월8일자 『대한제국관보』 433호에 게재된 것

전유물처럼 인식되던 호적이 건축 및 도시사적 시각으로도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자료로 변모하기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sup>10)</sup> 그러나 이러한 연구가치가 있는 광무호적이 현재 대다수 일본에 소재하고 있다. 때문에 광무호적에 대한 연구는 국내보다는 일본에서 더 심도있게 이루어져왔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려고 하는 한성부 지역의 호적도 모두 일본 京都大學總合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sup>11)</sup> 이 또한 전량이 아니고

10) 국내에서 '광무호적'을 건축 및 도시적 시각으로 분석한 첫 연구로는 김영배의 「韓末 漢城府 住居形態의 社會的 性格 -戶籍資料의 分析을 中心으로-」(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9~198, 7권2호, 통권34호, 1991)가 있다. 국외 학자로는 일본의 吉田光男이 있다. 그는 1990년부터 광무년간에 작성된 한성부호적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다양한 역사학적 시각으로 분석한 논문들을 발표하였고, 최근 그 연구 성과를 모아 『近代ソウル都市 社會研究-漢城の街と住民-』(草風館, 浦安, 2009)라는 책으로 출간하였다.

## 10 논문

전체의 1/6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中署의 정선방·장통방·경행방·수진방·견평방·관인방·서린방·징청방, 東署의 연화방, 西署의 반송방·용산방, 南署의 광통방·두모방·훈도방·대평방·회현방, 北署의 관광방·양덕방·안국방·준수방·의통방·순화방·가회방·진장방·광화방·상평방·연은방·연희방의 것들이다.<sup>12)</sup>

해당 호적들은 경우에 따라 건양원년(1896)의 것만 존재하기도 하고, 광무7년(1903)의 것만 존재하기도 하고, 광무10년(1906)의 것만 존재하기도 한다. 어떤 것들은 광무7년과 광무10년 두시기에 제작된 것이 모두 있기도 하지만 본고의 분석대상인 관광방의 호적은 광무10년에 작성된 것만 존재한다.<sup>13)</sup>

‘통호번호’의 제작을 위해 활용할 호적상의 기재사항은 주소와 戶主 즉 가주의 이름과 가족의 규모로 이에 대한 분석방법은 2-3에서 자세히 언급하기로 하겠다.

### 2-2. 1912년의 토지조사부와 지적도

광무호적의 기재 내용과 비교·분석할 사료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1912년의 토지조사부와 지적도다.

일제의 토지 조사사업은 토지 소유권의 조

사, 토지의 가격조사, 토지의 지형과 地貌의 조사로 구분되는데, 그 중 소유권과 가격 조사를 ‘지적조사’라고 칭한다. 지적조사는 주로 耕地와 墾地에 대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는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정책상 필요한 土地制度 및 地稅制度의 근간을 형성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시행된 것이 토지의 지형과 모양을 조사하는 ‘지형측량’이다. 지형측량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전체 토지의 상황을 정확하게 지도 위에 그리는 것으로 역시 전자와 마찬가지로 식민지 토지 정책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sup>14)</sup>으로 인식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지적조사와 지형측량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것이 ‘토지조사부’와 ‘지적도’다. 즉 토지조사부는 地目(용도), 假等級(가격), 地積(면적), 소유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지적도는 해당하는 위치에 해당하는 땅의 경계를 그린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사료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상관관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약속된 표식이 필요했다. 그 역할을 한 것이 地番이다.

경성부의 경우 洞·町의 東北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지번을 붙이고, 큰 町이나 通은 다시 丁目으로 나누어 정목마다 지번을 붙였다. 정목은 경복궁 가까운 지역이 낮은 번호, 먼 곳이 높은 번호가 되는 순으로 하였다. 이렇게 붙인 지번은 단순히 지적상의 번호에 그치지 않고 住戶의 번호와 일치시켜 모순됨이 없도록 하였다.<sup>15)</sup>

호구를 나누어 체계를 갖추었던 이전의 통호번호와는 다른 방식으로 지번을 붙인 결과, 일제의 식민지 토지정책은 행정적으로 편리함을 얻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전의 통호번호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붙여진 지번은

11) 본 연구자는 2007년 일본 동경대학 연수기간동안 교토대학 종합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광무년간 한성부 호적 12,000여 매의 데이터를 동경에 소재한 학승원대학의 동양문화연구소에서 마이크로필름 출력을 통해 확보하였다.

12) 일본에 소재한 광무호적과 한성부호적에 관한 좀더 자세한 것은 『日本所在朝鮮戶籍關係資料解題』(東洋文庫東北アジア研究班, 東洋文庫, 2004) 과 『近代ソウル都市社會研究-漢城の街と住民-』(吉田光男, 草風館, 2009)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13) 물론 광무7년과 10년의 것이 모두 갖추어진 지역이 좀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지만, 머리말에서도 언급했듯이 관광방의 경우는 해당시기 급격한 도시적 변화를 겪었고, 관련 사료도 풍부하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연구가치가 높다고 생각되어 관광방을 우선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14) 강병식, 앞의 책, 28~29쪽 참조

15) 강병식, 앞의 책, 47~48쪽 참조

서울의 도시적 변화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통호번도'의 작성을 위해 활용할 토지조사부의 기재사항은 주소(지번), 소유자, 지적(면적)이며, 지적도는 전체지역을 모두 이어 붙여 '통호번도'가 작성되었을 때 그 규칙을 읽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2-3 분석과정

'통호번도'의 작성은 앞서 언급한 광무년간 한성부호적과 1912년의 토지조사부 및 지적도의 디지털입력의 선행작업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입력과 분석과정을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광무년간 한성부호적 데이터 입력

한성부호적의 입력은 각주 11)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자가 소장하고 있는 마이크로 필름 출력본을 토대로 <그림4>의 [左]측에 있는 표와 같이 입력을 진행할 것이다. 호적 기재사항 중 토지조사부의 내용과 비교할 수 있는 호주, 주소, 가옥의 규모만을 우선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토지조사부 데이터 입력

토지조사부는 국가기록원에서 사본을 확보하여 입력한다. 토지조사부 전체의 사본을 확

보하는 동안 우선 1917년의 지적목록의 입력을 통하여 비교하고 토지조사부의 사본이 확보되는대로 재입력을 진행한다. 입력내용은 소유자, 주소, 대지용도, 면적 순으로 입력한다.

#### ③ 광무호적의 호주와 토지조사부의 토지소유자의 중복여부 확인

두 사료의 입력이 끝나면 광무호적에 기재된 호주와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토지 소유자를 교차 체크하여 같은 이름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해당하는 이름의 한자까지 같은지를 맞추어 본다. 이름이 같은 것으로 판명되면, 토지조사부의 비고란에 광무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적어둔다.

두 사료의 호주와 소유자의 중복여부를 확인하는 해당과정은 '통호번도' 제작의 핵심되는 과정이다. 토지조사부의 경우 호주와 토지 소유자가 대다수 일치하지만 집을 빌려서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일본학자 吉田光男(요시다 미쓰오)는 한성부호적을 분석한 그의 연구서 『近代ソウル都市社會研究-漢城の街と住民-』(草風館, 2009, 232쪽)에서 1903년부터 1906년까지 1坊의 3년간 전입 및 전출율이 60%를 웃돌며, 1896년부터 1906년까지 10년간의 전입 전출율은 86.5%

家主	坊	契	洞	統戶	규모(間)	洞番地	대지용도	1912년	1917년	규모(坪)
김기운	관광방	십자	소격	29	10	諫洞	123	塙 김사목	김사목	48
이강하	관광방	간	간	30	1	諫洞	124	塙 민영래	민영래	129
홍상공	관광방	십자교	간	30	2	諫洞	125	塙 김명규	김명규	34
						諫洞	126	塙 김영두	김영두	68
김사목	관광방	십자교 동천변	간	30	3	松峯洞	1	塙 양주환	양주환	21
민영래 /	관광방	벽동	간	30	4	松峯洞	2	塙 이현구	고교구 길	18
					5	松峯洞	3	塙 이용진	변종식	21
김영두	관광방	십자교 동천변	동천변	30	6	松峯洞	4	塙 변종식	변종식	8
민영래	관광방	간동	간	30	7	松峯洞	5	塙 오성오	전수성	40
이병두	관광방	십자교	간	30	8	松峯洞	6	塙 김승희	김승희	24
남정필	관광방	간동	간	30	9	松峯洞	7	塙 윤성진	윤성진	19
민영직	관광방	간동	간	30	10	松峯洞	8	塙 신석근	김순귀	18
						松峯洞	9	塙 이기호	이기호	18

## 12 논문

에 이르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분석대상이 해당 호적이 있는 지역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대체적인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본 연구의 비교분석 대상이 되는 광무10년에 작성된 호적과 토지조사부의 기록은 시간상 6년의 차이가 있다. 앞서 요시다 미쓰오의 연구 분석결과를 비추어 볼 때 중복되는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수가 70%이상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문제는 다음의 과정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보완하려고 한다.

### ④ 중복 확인된 이름의 주소지를 지도도에 표기

두 사료의 교차체크가 끝나면 비교란에 적은 광무호적의 통호를 토지조사부의 주소에 따라 지도도에서 확인하고 표시한다.

### ⑤ 통호가 확인되지 않는 필지추적을 위한 보완방법

두 사료를 비교하여 지도도에 표시한다고 해도 앞서 언급했듯이 상당수의 호구가 전입·전출을 하였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 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경우 연속되는 두 호구를 중심으로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가옥의 규모와 토지조사부의 대지면적을 비교하여 통호를 추정하여 기재함으로써 보완하려고 한다.

광무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가옥의 규모는 間을 단위로 하고 있다. 요시다 미쓰오는 그의 연구서에서 『土地家屋典當證明原本』에 실려 있는 「典當契約書」의 내용 276건을 분석하여 당시 가옥 1칸의 평균적인 면적이 1.54坪 또는 5.08㎡에 해당함을 밝혔다. 또 대지 내 가옥이 점하고 있는 건폐율이 中畧는 40.5%, 西畧는 44.5%에 달한다고 분석하였다.<sup>16)</sup>

본 연구에서 필지추적을 위해 보완하려고 하는 대지면적 환산의 기준은 요시다의 분석을

따르려고 한다. 다만 요시다 자신도 언급했듯이 제시한 건폐율은 평균치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가옥의 대지 내 분포상황을 고려하여 보완할 것이다.

앞서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통호번도’를 제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戶까지는 아니더라도 각 호가 속한 契나 洞의 명칭과 고지도 분석을 통해 統의 배분 정도는 추정 가능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광무년간 주소체계의 형성규칙을 부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의 문제점을 계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보완한다면 좀 더 정밀한 ‘통호번도’도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3. 觀光坊의 호적분석과 ‘統戶番圖’ 사례

### 3-1. 十家作統원칙과 戶加減의 기록

조선시대 다섯 호를 하나의 통으로 묶는 五家作統은 1675년 「五家統事目」이 반포되면서 이후의 호적대장에 기입되기 시작했다. 다섯 집을 1통으로 묶고 통마다 統主를 두는 제도는 이미 조선 초 법전인 『경국대전』에 명시되어 있었지만 호적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다.<sup>17)</sup>

오가작통법 시행의 표면적인 이유는 농경을 서로 도우며, 환란을 상호구제 하는데 있었지만, 실제로는 유민의 발생을 규제하고 각종 租稅의 납부를 독려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가작통법은 행정적인 기능을 원활히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국가의 지배력이 전통적인 생활공동체로서의 자연촌의 강인한 질서를 해체시키지 못하였기 때문<sup>18)</sup>으로 평가

16) 吉田光男, 『近代ソウル都市社會研究-漢城の街と住民-』, 草風館, 2009. 171~172쪽의 내용 참조

17) 손병규, 앞의 책, 41~42쪽 참조

18) 디지털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표 1] 광무10년 관광방 호적의 통호구성

\* - 숫자 : 마지막 호번 보다 해당하는 숫자만큼 가구 수가 적은 경우

\*\* + 숫자 : 가구 수가 마지막 호번 보다 많은 경우

統	戶	缺戶 加戶	統	戶	缺戶 加戶
1	10	-1	33	11	-2
2	11	.	34	10	-3
3	10	.	35	10	-1
4	10	.	36	13	-1
5	12	.	37	10	+1
6	.	.	38	13	-1 +1
7	10	.	39	10	-1
8	12	-1	40	10	.
9	10	.	41	10	.
10	11	-2	42	11	-1
11	11	.	43	10	-1
12	10	.	44	10	.
13	10	.	45	10	-8
14	10	-2	46	10	-2
15	10	.	47	13	-1
16	10	-1	48	11	.
17	11	.	49	10	.
18	11	.	50	16	-2
19	10	.	51	12	.
20	10	-1	52	10	.
21	11	-1	53	11	.
22	11	-1	54	12	.
23	10	-9	55	10	.
24	10	.	56	10	.
25	10	.	57	10	.
26	10	.	58	10	-1
27	10	.	59	11	.
28	10	-1 +1	60	12	-1
29	10	.	61	12	-1
30	11	-1	62	18	-2
31	10	.	합	664	-55
32	15	-6	총 호 수		609

받고 있다. 오가작통법의 시행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강화와 이완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고, 갑오개혁이후에 시행된 신식호적 작성 시에는 10호를 한통으로 묶는 十家作統이 시행되었다. 그런데 '통호번도' 제작을 위하여 관광방의 광무10년 호적을 우선 분석한 결과 10호 이상의 호가 1통으로 묶인 경우도 상당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 1]은 관광방의 광무10년 호적에 기재된 호의 숫자를 분석한 것이다. 관광방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주호는 호적의 마지막 통호만을

합산하면 664호에 해당한다. 결호된 것과 중복 호가 존재해서 그 수를 加減하면 609호가 되지만, 62통으로 구성된 관광방의 호적수가 620매 이상 존재했었다고 하는 것은 10호 이상의 수로 作統된 곳이 있음을 의미한다.

10호보다 가구 수가 적은 통에 대해서는 광무호적의 작성시기와 가옥의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관광방의 호적은 10家作統으로 기재되기 시작한 신식호적 중에 3번째로 작성된 광무10년의 것이다. 즉 건양원년(1897) 10家作統으로 기재되었던 호적이 9년 사이 대지의 분할 및 병합, 가옥의 파괴 및 신축, 호의 증감으로 인하여 缺番되거나 加番된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sup>19)</sup>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1896년 당시 시행된 다음의 「호구조사세칙」의 조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戶口調査細則」 第一款 戶籍

第九條 家屋을 新建하거나 增築하거나 或頽圯하거나 或燒漂하거나 人口가 生産하거나 身故하는 時는 該管官廳에 報明해야 改籍함

10호가 넘어서는 경우 가변을 부여하는 원칙은 호구조사세칙 13조의 내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戶口調査細則」 第二款 作統

第十三條 作統하다가 零戶가 有해야 五戶에 未滿하거나 本里 某統中에 附屬하고 五戶以上은 未成統이라 稱해야 本里 最近統 統首의 指揮를 承케함 但 本條零戶는 該里에 家戶增築함을 待해야 十數에 滿하거나 一統을 作함

19) 吉田光男도 앞의 책 229~231쪽에서 건양원년에 작성된 호적의 경우 加番이나 缺番이 거의 없음을 밝히고 있다.

## 14 논문

작통하다가 5호 미만이면 임의의 통에다 부속하고, 5호 이상은 되지만 10호가 안되면 가장 가까운 통의 통수가 관리하되 家戶가 늘거나 새로 지어져 10호가 되면 1통으로 묶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앞서의 세칙으로 보면 가호의 가감이 1~3호로 수가 적은 統은 전입과 전출을 통해 호번이 더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 호적이 하나도 없는 6통이나, 23통·32통·45통처럼 6호 이상의 호적이 없는 경우는 또 다른 도시적 변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2통·50통·62통의 경우도 5호 이상 번호가 더 부여된 것으로 보아 특별한 도시적 변화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4장 ‘통호번도’ 제작으로 읽히는 관광방의 도시적 변화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 3-2. 광무10년 관광방의 ‘統戶番圖’

2장에서 예시한 방법으로 관광방의 1912년 측량 지적도에 통호번을 부여하였으나 광무10년 호적의 호주와 1912년 토지조사부에 기록된 토지 소유자가 중복되는 경우는 겨우 10%에 불과했다. <그림 4>에서와 같이 연속호의 호주가 일치하여 해당하는 통호를 명확히 기재할 수 있는 곳보다 1개호씩 띄엄띄엄 있어 그 연속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

앞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호번도’를 만들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그림 5>와 같은 ‘통번도’가 작성되었다. ‘호번도’는 각 필지의 크기며 그 숫자를 헤아려 작성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반면 ‘통번도’는 10호씩 묶어 블록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랜덤하게 작성된 ‘호번도’를 통해서도 그 대충의 위치를 비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호번이 확인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광무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 중 契와 洞의 체계를 근대이전의 지도와 비교하



<그림 5> 관광방의 추정 ‘統番圖’  
배경 지적도(경기대 도시사연구실 제공)



<그림 6> 사간동 일대 ‘戶番圖’  
배경 지적도(경기대 도시사연구실 제공)

여 추정하고 보완하였다.

작성된 ‘통번도’를 보면 통의 배열이 커다란 블록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통부터 11



통의 경우 경복궁의 동십자각 모서리부터 시작해서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10호씩 묶어 作統한 것으로 보인다. 12통~22통, 23통~31통, 32통~46통의 블록들도 모두 같은 규칙으로 作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50통~62통사이의 규칙은 확인하기가 어렵다. 광무호적의 주소체계에도 특별한 특징이 없고, 호적과 토지조사부 사이에 겹치는 주소도 많이 확인되지 않아 그 배열을 짐작하기가 어렵다. 다만 다른 블록처럼 반시계방향으로 통이 배열되었을 가능성을 짐작할 뿐이다.<sup>20)</sup>

<그림 6>은 사간동 일대의 '호번도'다. 이 지역은 다행히도 연속되는 주호의 통호가 밝혀져 처음 예시했던 분석방법으로 '호번도'를 작성할 수 있었다. '호번도'를 살펴보면 주호에 호번이 매겨지는 것도 통번이 매겨지는 것과 같은 규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고 家戶의 입구가 면한 도로를 따라 호번이 부여되고 있다. 사간동 일대는 특별히 하나의 블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통호번의 구성이 가능하겠지만, 또 다른 조건에서 통호번은 어떤 방식으로 부여되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역의 '통호번도'가 작성되어야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21)</sup>

#### 4. '통호번도'제작으로 읽히는 관광방 대형필지의 변화양상

관광방의 호적을 분석한 결과,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加戶와 缺戶다. 호수가 5호 이상 더해진 곳으로는 32통·50통·62통이 있고, 6

호 이상의 결호가 생긴 곳도 6통·23통·32통·45통으로 4개 구역이나 된다. 해당하는 구역을 <그림 5>의 '호번도'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모두 대규모의 필지와 인접한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확인되었다.

관광방은 조선전기부터 경복궁과 가깝다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소격서, 장생전, 의빈시, 종친부, 중부시, 사간원, 의정부, 중학 등 중요한 제 관서들이 자리했던 곳이다. 해당 관서는 일반 주호와 달리 대형의 필지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 관서가 사회 및 정치적인 이유로 변화하게 되면 인근 지역의 민호들도 변화의 바람을 맞게 된다. 이와 같은 배경을 염두에 두고 4장에서는 앞서 加戶와 缺戶의 수가 많은 6통·23통·32통·45통·62통의 1906년을 전후한 도시적 변화를 인근 제 관서의 변화와 더불어 고찰하려고 한다.

##### 4-1. 사간원소멸과 대한병원의 移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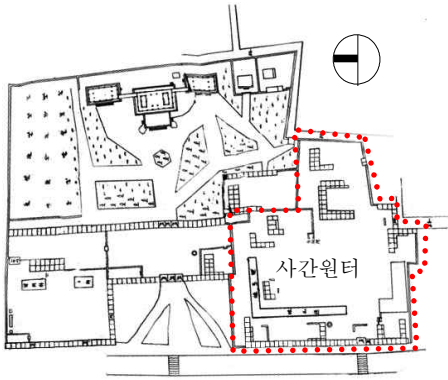
호적은 호구를 조사하여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官署는 통호에 산입되어 있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관해서는 광무호적도 다르지 않다.

1906년 당시 관광방 중에 가장 넓은 필지를 차지하고 있는 관서는 宗正府다. 종정부는 고종 1년(1864) 중부시와 종친부가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기구다. 19세기 한양을 그린 지도들에는 종친부 주변에 장생전, 중부시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자리했던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즉 각각의 관서가 각각의 땅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각각이었던 필지는 1864년 장생전은 터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인평대군 저택이 있던 승교방으로 옮겨가고, 중부시와 종친부가 합쳐 종정부가 되면서 도로는 사라지

20) 이와 같은 문제는 다른 지역의 통호번도를 제작해 가는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찾아 질 것으로 생각한다.

21) 이에 대해서는 전체 주소체계 분석과 더불어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로 남겨두기로 하겠다.

高 面 平 營 守 衛 尾 仁 修 宮 及 畿 湖 學 校 外 扈 衛 本 營 平 面 圖



<그림 7> 「仁修宮及畿湖學校外扈衛本營平面圖」 문화재연구소 자료정보관소장, 청사진형태의 것으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필자가 편집하였다.

고 대형의 필지로 합해졌다.<sup>22)</sup>

이와는 별개로 중친부의 남쪽에 자리하고 있었던 사간원은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다가 1894년 갑오개혁을 기점으로 그 기능을 상실하고 만다. 기능을 상실한 사간원의 館舍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신문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皇城新聞』 1899년 5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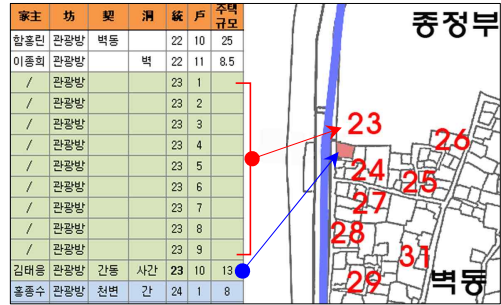
官立病院을 前司諫院으로 定하고 現今 修理하야 竣工이 在 邇하기로 醫師와 製藥師가 衛生의 規則과 條件을 制定한다더라.

『독립신문』 1899년 5월 30일

大韓病院 處所를 前司諫院 公廩로 정하여 이 날부터 開業하다.

앞의 황성신문과 독립신문의 기사는 1899년 3월 의소문 근처에 설립<sup>23)</sup>했던 内部관찰의 관

22) 중친부 터와 건축의 변화상에 관해서는 2010년 3월 한국건축역사학회에서 주관한 월례학술발표대회 자료집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이후 중정부가 되었던 중친부는 이후 중정원·중정사·중정시 등으로 계속 바뀌었으므로 지도나 문헌자료에는 변화된 명칭으로 등장한다.



<그림 8> 사간원의 소멸과 23동의 결호  
광무10년호적분석표(좌) 23동 인근 統番圖(우)

립 병원인 대한병원이 사간원의 공해를 수리·준공하고 이설해 5월부터 치료를 시작했다는 내용이다. 이때 대한병원이 이설된 곳이 <그림 7>의 우측 하단부의 사간원 터다.

<그림 7>은 1908~1910년 사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도면으로, 仁修宮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국빈을 접대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던 중정부의 모습과 기호학교가 들어선 사간원의 터를 확인 할 수 있는 도면이다.<sup>24)</sup>

그림의 남서쪽 모서리에 위치한 연와조 건물과 도로변을 두르고 있는 행랑은 사간원이 철폐된 이후 변화된 모습을 반영한 것으로 관광방 23동의 缺戶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관련하여 <그림 8>을 보면 호적 중 23동의 1~9호가 결호되고 사간원 필지 남쪽모서리에 붙어 있는 23동의 마지막 10호만이 호적으로 남아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10가작동의 원칙인 광무호적의 최초 조사시점인 1897년에는 모든 통들이 10호를 갖추어

23) 『皇城新聞』, 1899년 3월 02일, “内部衛生局에서 昭義門內倉前賑民所에 大韓病院을 設立하는디 經費 三千元을 度支部에 照會하야 請호고 惠衆局醫士 韓宇 金炳觀 兩氏로 또한 該院醫士로 兼한다 하는 說이 有하니 만약 所聞과 如하면 政府에서 如此히 衛生과 濟衆하는 方策을 우리는 深感하노라”

24) 「仁修宮及畿湖學校外扈衛本營平面圖」는 본 연구자의 과제를 수행하기위하여 문화재연구소 자료정보관에 요청하여 촬영한 것으로 촬영일자는 2009년 9월 23일이다.

작성되었다. 그러나 이후 3년마다 갱신된 호적들은 1897년 이후 일어난 도시적 변화를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 변화의 증거가 바로 缺戶와 加戶인 것이다. 이는 지적조사 이후 필지들이 분화되거나 합필되는 것이 지면에 반영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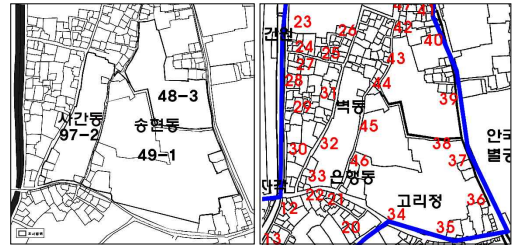
즉 관광방 23통의 호적에서 9호가 결호된 것은 사간원 남서쪽 담장구역에 위치해있던 주호들이 대한병원의 이설에 따른 경역의 확장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 가게 되고, 토지와 건물은 대한병원 경역에 편입되었기 때문이다.<sup>25)</sup>

대한병원은 1906년 12월 현재 혜화동 서울 대학병원이 있는 마등산에 자리를 점하고 신식 건물이 지어질 때까지 7년 정도를 해당지역에서 의료활동을 했다.<sup>26)</sup>

#### 4-2. 황태자비의 간택과 海風府院君 형제의 家坵 확장

23통과 유사한 缺戶 양상을 보이는 구역은 32통과 45통이다. 이곳은 현재의 주소로 보면 사간동 97-2번지와 송현동 49-1번지, 48-3번지 일대에 해당하며 현재 발굴이 진행 중에 있다.

이곳은 총 면적이 36,642㎡(1912년 토지조사부 기준)로 관광방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필지다. 그런데 사간동 97-2번지와 49-1, 48-3번지 일대가 처음부터 이렇게



<그림 9> 윤택영·덕영 형제의 가대규모  
사간·송현동 현재 필지 및 지번현황(좌), 統番圖(우)

큰 필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지역의 통호번호(그림 9의 우측)를 보면 32통~46통에 걸친 넓은 곳으로 모두 15개통으로 구성되어있다. 즉 이 지역은 1897년의 호적이 작성될 때만 해도 150호의 가구로 구성되어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06년에 작성된 호적의 호수는 가감된 수를 헤아리면 123호가 된다. 총 27호가 줄어들었는데 이에 대한 물리적 상황 역

[표 2] 관광방 32·32통 광무호적의결호  
출처 : 광무10년(1906) 호적

家主	坊	契	洞	統	戶	집규모 (間)
/	관광방			32	1	
/	관광방			32	2	
/	관광방			32	3	
/	관광방			32	4	
송원근	관광방	간동	간	32	5	7
/				32	6	
/				32	7	
김순홍	관광방	간동	간동	32	8	19
박인국	관광방		간	32	9	12.5
윤덕홍	관광방	간동	간	32	10	7
김명수	관광방	십자교	간	32	11	6
김현기	관광방		간	32	12	7.5
손소사	관광방	십자교	간	32	13	6
이원식	관광방	십자교	간	32	14	3.5
윤원구	관광방	대안동	간	32	15	10.5
정봉화	관광방	간동		33	1	7
신석규	관광방	간동	사간동	33	2	7.5
김만보	관광방		벽동	33	3	9.5
박상궁	관광방		벽	33	4	10.5
민병석	관광방	벽동	간	33	5	200
민병철	관광방		벽	33	6	12
이선풍	관광방	벽동	벽	33	7	9
현영운	관광방	벽동	벽	33	8	9.5
/	관광방			33	9	
/	관광방			33	10	
최학주	관광방	벽동	벽	33	11	11

25) 대한병원의 이설로 이주한 가구들의 위치변동은 중정원 동편에 자리한 62통의 호수와 연관 지어 생각해볼 여지도 있다. 62통은 관광방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작통된 구역이며 다른 통보다 8호나 호수가 많다. '통번호'를 통해 확인된 통의 위치도 다른 통들이 배열되는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있어, 23통 주호들이 이주하여 호수가 대량 증가한 것으로도 추측해 볼 수 있다.

26) 『皇城新聞』1906년 12월 01일 '病院地變查 大韓病院基址를 馬登山에 定界호았다함은 已報어니와 變開호則當初定界時에 皇室所有地는 勿爲犯占인디 現今該病院을 建築호에 皇室基지가 犯入호으로 內部技手와 度支部技手와 漢城府主事가 合同호야 該基地를 昨日에 變爲調査호았다더라'

## 18 논문

시 ‘통호번호’ 제작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2통과 33통은 시간동 97번지 일대로 1906년의 호적내용을 살펴보면 32통의 10호 이내의 호수는 6호가 줄고 10호 이상의 호수는 5호가 증가하였다. 이와 연이어 있는 33통은 2호가 줄어들었다. 해당지역 호적의 분석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33통 5호인 민병석(閔丙奭)의 주택규모가 200칸으로 다른 집들의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33통 5호는 1912년 토지조사부와 비교하여 관광방의 통호번호를 제작하는 과정 중에 소유주가 윤덕영(尹德榮)으로 바뀌고 지번은 97번지로, 필지의 규모는 2,103평임이 확인되었다.

32통과 33통의 결호는 시간동 지역에서 가장 큰 가대의 소유가 민병석에서 윤덕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귀결해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앞서 고찰한 시간원에 대한 병원이 이설되는 과정에서 토지와 건물이 정비되며 생긴 상황과 유사하다.

같은 시기 비슷한 과정을 통해 소규모의 가대들이 대규모의 가대에 합쳐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송현동 48~56번지다(1912년 토지조사부 지번기준). 이 지역 역시 1919년 식산은행의 사택이 들어가기 전까지 어떤 대규모의 국가시설도 자리하지 않았던 곳으로 개인에게서 개인에게로 가대의 소유가 넘어가면서 소규모의 가대들이 대형 가대에 병합되는 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보인다.

[표 3]은 1912년의 토지조사부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현재 송현동 48-3, 49-1번지가 된 필지의 소유자와 그 면적을 기입한 것이다. 총 9,377평에 해당하는 이 땅은 광무호적의 분석을 통해 작성된 통호번호에서 보면 34통 6-7호, 35통 10호, 36통 8호, 38통 3호, 39통 1호, 42통 8호, 43통1호, 45통1-4호, 45통 7-10호, 46통 6호와 8호가 합쳐져서 된 것임을 알

[표 3] 윤택영 소유의 가대와 규모

출처 : 1912년 토지조사부

동	번지	지목	소유자	면적(평)
松峴洞	48	塋	박영정	2,656
	49	塋	박영정	40
	51	塋	박영정	1,607
	52	塋	박영정	66
	55	塋	윤택영	191
	56	塋	윤택영	4,817
합계				9,377

수 있다.<sup>27)</sup>

이 호들은 광무10년의 호적에 모두 결호로 표기되어 있는 것들로 주택의 규모등도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미 다른 가대에 편입되었음도 가정해 볼 수 있지만, 앞서 33통의 민병석 가옥처럼 인근 호에 대규모의 주택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단지 가대만 있고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가대의 소유자가 바뀌는 과정에 호적이 작성되었음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대규모 가대의 병합과 소유자의 변화를 이끌어 낸 정치적 사건은 1906년에 있었던 황태자비의 간택이라 할 수 있겠다. 세자위에 있던 이작(李炤 : 훗날 순종)은 1897년 대한제국의 수립됨에 따라 황태자로 책봉되었고 1904년에 이전 황태자비가 졸서하자 새로운 황태자비를 맞이해야만 했다.

이 때 황태자비로 간택된 사람이 윤택영(尹澤榮)의 딸이다. 윤택영은 딸이 황태자비로 간택되자 이듬해 특별히 가자되었으며 知敦寧司事로 칙임관 2등에 서임되었다. 이어 육군참장, 부장, 찬모관 등을 역임하였다. 순종이 즉위한 1907년에는 해풍부원군에 봉작되었으며 황태자 책봉시에 부사로 활동한 공으로 훈1등

27) 호번호를 보면 34-46통은 모두 인접해 있는 통들로 이곳에 속해 있는 가대는 내부적으로는 서로 경계를 맞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이 가대가 병합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태극장이 주어졌고 다시 大勳이 서훈되고 이화대수장을 받았다. 같은 해 皇后宮大夫로 임명되고 칙임관 1등에 서임되었다.<sup>28)</sup>

황태자비의 간택은 윤택영 뿐 만 아니라 그 형제의 정치적인지도 공고해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형제들의 한성부내 토지소유의 규모를 늘릴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추론은 앞서 고찰했던 시간동 97번지의 넓은 가대를 소유하게 되었던 윤택영이 윤택영의 형이라는 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1912년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송현동에 위치한 윤택영 소유<sup>29)</sup>의 땅은 9,605평으로 대략 31,700㎡에 달하고 시간동에 위치한 윤택영의 땅은 2103평(약 6940㎡)이나 된다. 개인이 짧은 기간 동안 이처럼 넓은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계기는 경제력의 급증 또는 정치권력의 실세로 자리 잡는 것 중 하나의 경우다. 윤택영은 그의 딸을 황태자비를 들이고 난 후 지속적인 경제적 압박에 시달린다. 각종 사기사건에 연루되면서 중국으로 도주하기도 할 정도로 그의 경제력이 급증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때문에 윤택영 형제 소유의 가대의 규모가 증가한 것은 정치적인 문제에서 기인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 4-3. 外部의 폐지와 内部영역의 확장

관광방 호적 중 6통은 호적이 1호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앞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6

28) 디지털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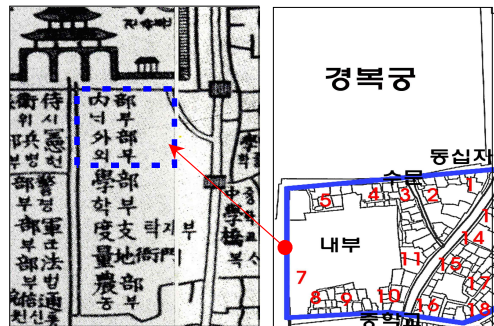
29) 토지조사부에 소유자가 박영정이라고 되어있는 것도 윤택영의 소유로 본 것은 『皇城新聞』 1910년 5월 27일의 다음 기사내용에 근거한다. ●尹邸門牌改懸 海豐府院君尹澤榮氏는 安洞家屋을 各債主에게 委任하야 債額을 幾許間磨勘한다더니 近聞하즉 該家門牌를 其寡居兄嫂의 名下로 朴泳貞氏라 書懸하얏다더라. : 윤택영에게는 윤시영(尹是榮), 덕영, 숙영(肅榮)의 세 형이 있었고, 그중 일찍 세상을 떠난 형 시영의 아내가 박영정이었다.

통 전체호의 가대가 관서의 땅으로 편입되었음을 의미한다.

‘통호번도’의 배열 상 6통은 광화문통에 위치한 지역으로 조선시대 최고 의결기관인 의정부 가 자리했던 곳의 앞쪽에 해당한다. <그림 1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6통은 5통과 7통의 사이로 내부의 앞쪽 광화문거리를 향해있던 지역이다. 배경이 되는 1912년 제작 지적도는 이미 1906년 이후 어느 정도의 도시적 변화가 일어난 후 작성된 것이므로 필지들이 1906년의 호적을 반영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6통은 ‘통호번도’의 배열에 따라 지적도와 관계없이 内部로 진입하는 입구부를 제외한 5통의 앞쪽과 7통의 옆 부분에 있던 주호를 편제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내부의 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의 최고의결 기관이었던 의정부가 있었던 곳이다. 의정부의 청사는 경복궁과 더불어 임진왜란 이후 폐허가 된 채로 방치되어 있다가 고종2년(1865) 대왕대비의 하교로 중수되었다.<sup>30)</sup> 경복궁이 중건되면서 다시금 광화문 앞 육조거리를 번듯하게 만들어야했었기 때문이다.

조선의 관제는 갑오개혁을 기점으로 ‘의정부



<그림 10> Map of Seoul(1900년)의 육조거리 부분(좌)과 관광방 1~11통의 統番圖(우)

30) 『고종실록』 고종 2년(1865) 2월 9일(을해) 3번 기사에 임진왜란 이후 발 사이에 버려졌던 의정부의 청사를 중건하여 옛 모습을 회복케 하라는 대왕대비의 전교를 통해 해당하는 내용을 알 수 있다.

관제안'과 '궁내부관제안'에 따라 정부와 왕실이 제도적으로 분리되고, '의정부관제안'에 따라 국왕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면서 조선 후기 이래 유명무실화되었던 의정부가 정치의 중추기구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 조선초기부터 사무분장 기구였던 6조가 내무·외무·탁지·군무·법무·학부·공부·농상의 8아문으로 개편되기에 이른다.<sup>31)</sup>

이중 내무부와 이조의 소관 업무를 통합, 계승했던 내무아문은 1895년 內部로 이름을 바꾸어 그 관사를 이전 의정부가 있던 곳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중건된 의정부청사도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내무아문이 내부로 이름을 바꾼 1895년 외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외무아문도 외부로 이름을 고쳤다. 그런데 외부는 1905년(광무 9) 11월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됨에 따라 12월 '외교관 및 영사관제'를 폐지, 1906년에는 외부를 폐지하고 의정부에 외사국(外事局)을 설치하여 외교문서의 보관관을 맡게 되었다.

1905년 을사조약을 계기로 외부가 폐지되고 의정부에 외사국이 설치되면서 기존의 의정부와 內部는 청사의 면적이 협소해서 지속적으로 인근에 있던 기관의 청사를 임시로 수리해 쓰기도 했다. 이에 대한 기록은 『各部通牒(奎 17746)』의 1907년 1월 7일 의정부참정대신 박순제가 궁내부로 발신한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의 사무가 많은데 관청이 좁아서 어려움이 있으니 의정부에 이웃해 있는 태의원의 청사를 수리해 잠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문서다. 1월17일 해당하는 기안은 수락되었고(各部通牒(奎 17824)』 태의원은 수리되기에 이른다.

비록 해당문서가 1907년의 것이기는 하지만 1905~6년 사이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기록이라 할 것이다. 의정부와 내

부 그리고 외부까지 같은 청사를 쓰는 상황에서 공간을 확보하기위해 인근지역의 민가를 수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가나 왕실에서 필요한 땅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민가를 사들이거나 주거민을 이주시키고 그 가옥을 관청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늘상 일어나던 일로 특기할 만한 것이 아니다.<sup>32)</sup> 즉 대한제국기에 이와 같은 일이 관광방 6통에서도 행해진 것이다. 청사공간의 부족은 內部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육조거리에 있던 제 관서들의 문제로 결국 1907년 양옥으로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이어지게 된다.<sup>33)</sup>

## 5. 맺음말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이전 한성부의 '統戶番圖' 제작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光武年間에 작성된 호적을 분석하는 과정 및 방법을 밝히고 여기에서 읽을 수 있는 도시·건축적인 변화를 찾아내려고 한 것이다.

경복궁의 동쪽지역인 관광방을 우선 분석 대상으로 삼아 '統戶番圖'를 제작한 결과 統과戶의 배열이 모두 블록의 외곽을 따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이루어졌음이 밝혀졌다.

'통호번도'제작을 통해 광무호적에 기재된 통호구성 및 加·缺戶의 상황을 도시·건축적 변화에 결부하여 읽어내는 것도 가능했다. 관광방의 경우 결호가 발생하는 통수가 다수 존재했는데 23통의 경우 사간원이 없어지고 그 땅에 대한병원이 移設되는 과정에서 민가를

32) 이와 관련해서는 조선시대 사묘들의 이동과 궁가의 건립, 군영의 창설등을 다룬 의계, 등록, 관련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3) 이규철, 「대한제국기 한성부 도시공간의 재편」,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0. 222-223쪽에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는 「광화문의제관아실측평면도」를 사례로 들어 신청사가 건립되는 과정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31) 디지털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수용한 결과에서 비롯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시간동 97번지, 송현동 48, 49번지 일대인 32통~46통의 변화는 23통과는 달리 개인의 토지소유과정에 비롯된 것임도 밝혀졌다. 딸을 황태자비로 들인 해풍부원군 윤택영과 그의 형 윤덕영이 정치적입지가 강화되자 대규모 가대를 확보하기 위해 이르렀고 이 과정에서 소규모의 가대가 병합되는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의정부 청사의 전면에 위치했던 6통의 소멸은 중앙관제의 개편·편입 따른 문제로 해당 관서의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임도 확인되었다.

이처럼 광무호적과 통호번도 제작을 통해 읽어낼 수 있는 도시적 변화는 대한제국기(1897년)에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는(1906년) 과도기적 시점의 것들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본 연구가 조선후기 한성부와 일제강점기 경성부의 눈에 띄지 않는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역할을 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다.

한성부 전체의 '統戶番圖' 제작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다. 또 혼자만의 독단적인 의견으로 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본 연구는 이를 염두에 두고 진행한 기초연구로 논리적 비약이나 분석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분석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반영한 '통호번도' 제작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전체 '통호번도'를 완성하여 학계에 배포한다면 도시 및 건축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건양원년, 광무7년, 광무10년 한성부호적, 일본 京都大學 總合博物館 소장
2. 1912년 제작 토지조사부, 국가기록원 소장

3. 『朝鮮王朝實錄』·『日省錄』·『經國大典』·『備邊司謄錄』·『皇城新聞』·『每日新報』-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4. 『京城府管內地籍目錄』, 大正6年(1917)영인본, 大林出版社, 서울, 1982
5. 『京城府管內地籍目錄』, 昭和2年(1927) 영인본, 大林出版社, 서울, 1982
6. 『京城府壹筆每地地形明細書』, 昭和4年(1929)
7. 『京城便覽』, 弘文社, 昭和4年(1929)
8. 1914년 제작 서울 지적원도
9. 서울歷史博物館 編, 『서울지도』,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서울, 2006
10. 이 찬, 『서울의 옛 地圖』, 서울시립대학교 부설서울학연구소, 서울, 1995
11. 이규철, 「대한제국기 한성부 도시공간의 재편」,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0
12. 허영환, 『정도600년 서울지도』, 범우사, 서울, 1994
13.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編, 『近代建築圖面集』, 韓國學中央研究院, 성남, 2009
14. 강병식, 『日帝時代 서울의 土地研究』1판, 민족문화사, 서울, 1994
15. 吉田光男, 『近代ソウル都市社會研究-漢城の街と住民-』, 草風館, 浦安, 2009
16. 東洋文庫東北アジア研究班, 『日本所在朝鮮戶籍關係資料解題』, 東洋文庫, 東京, 2004
17. 손병규, 『호적』1판, 휴머니스트, 서울, 2007
18. 申正熙, 「五家作統法小考」, 大丘史學 12·13 合輯, 1977
19. 한국건축역사학회, 『종친부와 터 그리고 건축의 가치』, 2010년 3월 월례발표회자료집, 한국건축역사학회

접수(2010. 6. 15)

수정(1차: 2010. 12. 10, 2차: 2010. 12. 22)

게재확정(2010. 12. 31)

# A Study on the Urban Changes of *Hanseongbu*漢城府 through Analysis on Kwangmu-Census光武戶籍

Chung, Jung-Nam

(Ph.D, Research Pr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a fundamental study for '*Tonhobeondo*統戶番圖-making' of Hanseongbu(modern Seoul) before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onhobeondo*統戶番圖-making' will be accomplished through analysis on Kwangmu-census光武戶籍 as a map of address-system in the Joseon period. It is possible to consider the urban changes of Hanseongbu(modern Seoul) because of '*Tonhobeondo*統戶番圖' reflects a urban situation from the 1897 to 1906.

At present, an address-system of Korea was made by the cadastral survey in the 1914. By the way, new address-system was a completely different from traditional address-system of Joseon period. Consequently, different two address-system caused a lot of difficulties the study on the urban changes. For such a reason '*Tonhobeondo*統戶番圖-making' is very important. If '*Tonhobeondo*統戶番圖-making' would be accomplished, it will be used by a field of urban, architectural and historical science study besides.

---

Keywords : Kwangmu-census光武戶籍, *Tonhobeondo*統戶番圖, Address-system

---